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소관부서 : 교통정책과

제정 1996 · 3 · 1 조례 제 97호 제정 2001 · 8 · 6 조례 제 388호 전문개정 2005 · 7 · 7 조례 제 573호 개정 2009 · 10 · 9 조례 제 802호 일부개정 2011 · 9 · 22 조례 제 904호 일부개정 2018 · 7 · 31 조례 제1415호 일부개정 2020 · 10 · 7 조례 제1628호 (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 일부개정 2023 · 11 · 1 조례 제201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이 특별회계에 「주차장법」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9·10·9, 2011·9·22〉

제1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〈개정 2023·11·1〉

[본조신설 2018·7·31]

제2조(세입)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 〈개정 2009·10·

- 9, $2011 \cdot 9 \cdot 22$
- 1.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(「주차장법」제9조, 제14조 관련)
- 2.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(「주차장법」제8조 관련)
- 3.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(「주차장법」제19조 관련)
- 4. 노외 및 부설 주차장 주차위반 과징금(「주차장법」제24조의2 관련)
- 5. 이행강제금의 징수금(「주차장법」제32조 관련)
- 6.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대부료 및 과태료
- 7.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(「주차장법 시행령」제15조 관련)
- 8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- 9. 국・도비 보조금
- 10 주・정차 위반 과태료(「도로교통법」제161조 관련)
- 11. 주·정차 위반 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 징수 금 (「도로교통법」제35조 관련)
- 12. 혼잡통행료(법 제35조 관련)
- 13. 교통유발부담금(법 제36조 관련)
- 14.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(법 제60조제1항 관련)
- 15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
- 16. 기타 잡수입
- 17.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8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
- 18.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과 대료
- 1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4조제1항, 제84조제1항·제2항 및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·과태료 및 범칙금
- 20.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
- ② 제1항제7호의 전입금에는「주차장법 시행령」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.〈개정 2011・9・22〉
- **제3조(세출)**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〈개정 2011·9·22〉
 - 1.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경비
 - 2.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·운영비용의 일부 보조
 - 3.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
 - 4. 차입금의 상환
 - 5.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

- 6. 불법 주·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
- 7.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
- 8.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
- 9.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
- 10. 법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조치에 대한 비용
- 11.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
- 12. 법 제2조1항제10호 내지 제20호의 세입확충을 위해 필요한 비용
- 13.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- 제4조(일시차입) 이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 할 수 있다.
- 제5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.
- 제6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%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·10·7〉
- 제7조(준용)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「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한다.

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부칙〈2009·10·9 조례 제80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1·9·22 조례 제90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 · 7 · 31 조례 제141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·10·7 조례 제1628호,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「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 중 "예비비도 상당한"을 "예비비로 1% 이내의"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〈2023·11·1 조례 제201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